

의안번호	323
발의일자	2023. 8. 17
회부일자	2023. 8. 22

제341회 도의회 임시회
제1차 농수산위원회
2023. 8. 30. (수)

『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

농 수 산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 진 영

『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남영숙 의원 외 10명

2. 개정이유

-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신속·정확한 검사결과의 주기적 공개 및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을 규정함(안 제5조의2)

4. 관련법령

- 농수산물 품질관리법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
- 예고기간 : 2023. 8. 23. ~ 8. 28. 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94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가. 본 개정 조례안은

-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검사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하여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함.

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

제5조2(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)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(homepage), 모바일 앱(mobile app)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, 시기별,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명예 수산물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다..

-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를 규정하여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- 더불어,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을 통해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. 종합 검토결과

-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최근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유해성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.
-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투명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.
- 금번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검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, 수산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제3항의 “주기적”이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판단되는 바, 조사 결과 제공 시기를 주1회 또는 매주 수요일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○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2013년 ~ 계속
- 사업내용 :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
- 지원근거 :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(안전성조사)

경상북도 수산물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조례 제6조

○ 수산물 안전성 검사 대상(어업기술원)

- 거래전 단계 및 생산단계 수산물
 - 위공판장 / 양식장 / 마을어장 / 오염우려 생산지역

○ 수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 흐름도

- 시료수거 협조요청 → 안전성 조사 공무원 시료수거 → 시료 손질
분석항목별 전처리 → 시료 분석 → 안전성 조사 결과 통보

※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9조에 의거 시료 수거 기준 12일 이내 결과 통보

○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통보 경로

- 시료수거 대상지 (위판장 / 양식장 등) 공문 우편 발송
- 경북바다환경정보 APP에 검사 완료 후 익일내 결과 업로드
- 경상북도 홈페이지내 어업기술원 게시판 일주일 1회 결과 취합 업로드
- 해양수산부 일주일 2회 (월/수) 결과 취합 발송 후 누리집 결과 공개

○ 수산물 안전 관리 보고 경로

- 수산물품질관리원, 수산과학원 ⇒ 식약처 · 해수부
- 지방 식약청 ⇒ 식약처
- 시·도 검사기관(경상북도 어업기술원) ⇒ 식약처 · 해수부